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구정방향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13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687호 2012. 4. 23.(월)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38호(인천도시관리계획(연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청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, 도시계획시설 : 도로, 주차장, 소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) 1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39호(도로명주소 고시) 7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-314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) 9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도시계획시설 : 도로, 주차장, 소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도시계획시설 : 도로, 주차장, 소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(☎810-7492) 및 도시계획과(☎810-746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2년 4월 23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1. 결정취지 :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5호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(연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도시계획시설:도로, 주차장, 소공원)의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2.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79-5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청학구역	연수구 청학동 일원	340,191	감)106.3	340,084.7	용도지역 :제2종 일반주거지역
변경	연수구역	연수구 선학·연수·청학동 일원	6,210,635.5	감)689.3	6,209,946.2	용도지역 :제3종 일반주거지역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역명	위 치	결정사유
청학구역	연수구 청학동 일원	◦주차장 및 도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조정
연수구역	연수구 선학·연수·청학동 일원	◦소공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조정

나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1) 청학 제1종지구단위계획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총 계		340,191	감)106.3	340,084.7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	297,676	감)106.3	297,569.7	87.5	
	제3종일반	42,515	-	42,515.0	12.5	

2) 연수 제1종지구단위계획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총 계		6,210,635.5	감)689.3	6,209,946.2	100.0	
소 계		4,519,050.8	감)689.3	4,518,361.5	72.8	
주거지역	제2종일반	2,504,283.8	-	2,504,283.8	40.4	
	제3종일반	1,981,866.4	감)689.3	1,981,177.1	31.9	
	준주거	32,900.6	-	32,900.6	0.5	
소 계		310,942.9	-	310,942.9	5.0	
상업지역	중심상업	165,233.1	-	165,233.1	2.7	
	일반상업	145,709.8	-	145,709.8	2.3	
소 계		1,380,641.8	-	1,380,641.8	22.2	
녹지지역	자연녹지	1,311,766.3	-	1,311,766.3	21.1	
	보전녹지	68,875.5	-	68,875.5	1.1	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

1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

■ 도로총괄표

유 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								
합계	2	550	8,819.3	-	-	-	2	550	8,819.3	-	-	-
중로	1	441	7,938.0	-	-	-	1	441	7,938.0	-	-	-
소로	1	109	881.3	-	-	-	1	109	881.3			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350	18	집산 도로	413	청학동 91-14	청학동 48-1 (북측지구계)	일반 도로	-	인고 33호 (2000. 3. 8)	구역내 : 413m
변경	중로	2	350	18	집산 도로	441	청학동 117-6	청학동 48-1 (북측지구계)	일반 도로	-	인고 33호 (2000. 3. 8)	구역외 : 28m
기정	소로	2	11	8	국지 도로	72	청학동 63-6	소로2-10	일반 도로	-	인고 33호 (2000. 3. 8)	구역내 : 72m
변경	소로	2	11	8	국지 도로	109	청학동 444-8	소로2-10	일반 도로	-	인고 33호 (2000. 3. 8)	구역외 : 37m

※ 구역내 : 청학지구단위계획구역, 구역외 : 청학지구단위계획구역 외

■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 2-350	중로 2-350	▶변경 연장 : 413m ⇒ 441m	현행도로를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도모
소로 2-11	소로 2-11	▶변경 연장 : 72m ⇒ 109m	

2)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

■ 주차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주차장	인천 연수구 청학동 90-5	-	증)4,365m ²	4,365m ²	금회결정	-
신설	②	주차장	인천 연수구 청학동 79-5	-	증)6,096m ²	6,096m ²	금회결정	-

■ 주차장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①	주차장	주차장 (면적 : 4,365m ²)	수인선 철도 지상구간의 난개발 방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
②	주차장	주차장 (면적 : 6,096m ²)	

3)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

■ 철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 치			연장(m)	면적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경과지				
기정	①	철도	일반 철도	중구 북성동	남동구 논현동		11,790	424,000	건고 제54호 (1970. 2. 9)	-
변경	①	철도	일반 철도	중구 북성동	남동구 논현동		11,790 (420)	424,000 (4,200)	건고 제54호 (1970. 2. 9)	중복 결정

※ ()는 중복결정 구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①	철도	철도변경없음	도시관리계획 상 철도 중복구간 표시

4)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

■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소공원	소공원	인천 연수구 청학동 504-6	-	증)1,334.3 m ²	1,334.3m ²	금회결정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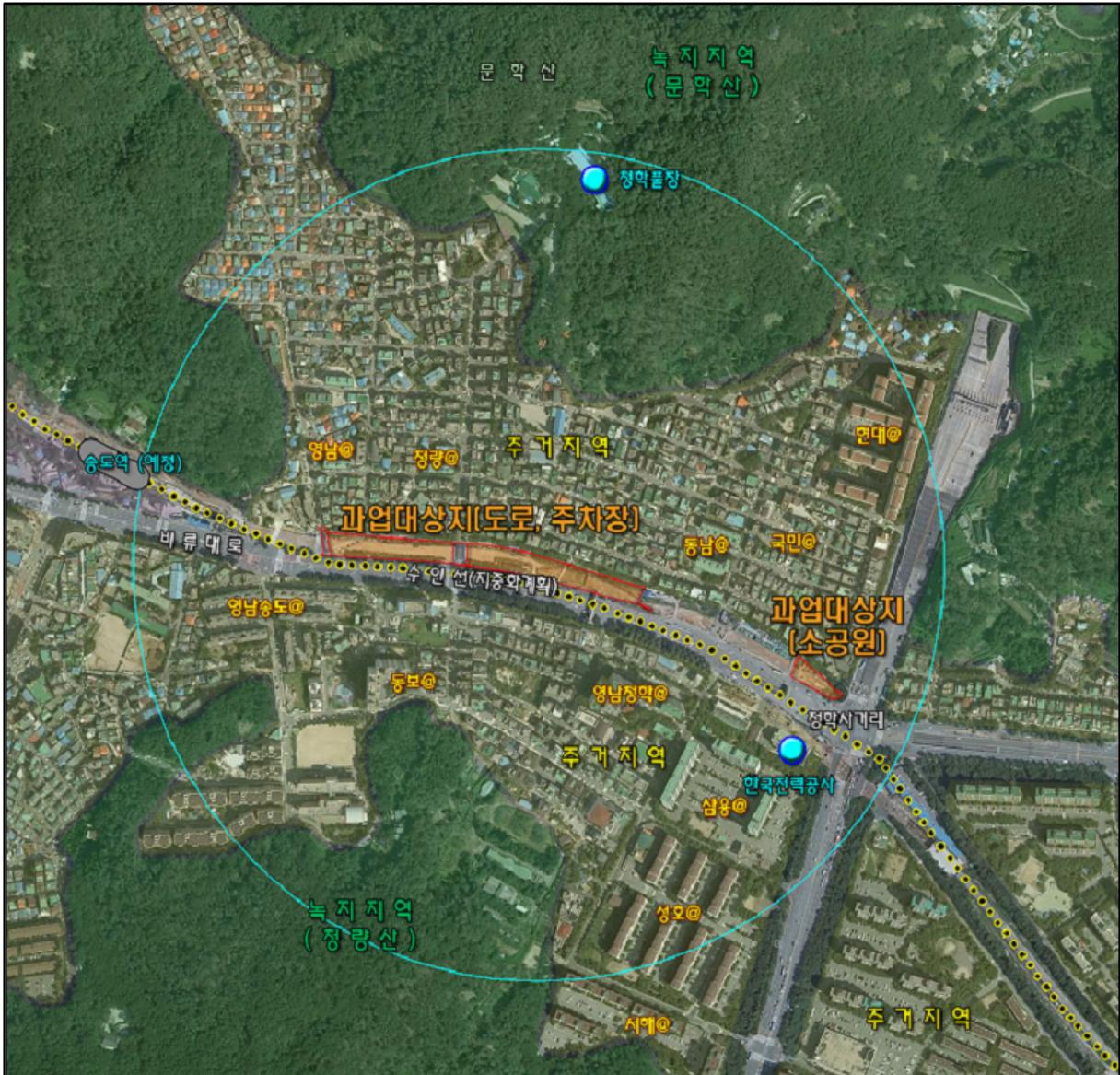
■ 공원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결정 내용	결정 사유
①	소공원	▶신설 위치: 연수구 청학동 504-6번지 일원 면적: 1,334.3m ²	수인선 철도 변경구간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 쉼터를 위한 소공원 설치

4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서와 같음)

5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(☎810-7492) 및 도시계획과(☎810-7466)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 반에게 보입니다.

○ 위치도

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변경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4. 23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56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79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4. 2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-7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56	신축	2011-01-31	아트센터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송도 더샵 하버뷰2

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2년 4월 18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관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, 저출산·고령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마련함.
-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능력 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이나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개정 주요내용

- 주차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“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□□, □□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□□조항 신설 (안 제5조제9호·제10호)
-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“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”에서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” 로 개정 (안 제10조제1항 제2호)
-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선정기준·절차·방법 등을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 신설 (안 제10조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참조 : 교통행정과장,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(전화 : 810-7491, FAX : 810-74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(안)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(<http://www.yeonsu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(안)

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: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
9.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카드 등을 소지한 자 : 50퍼센트 감면

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 라 한다)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1. (생략)
 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
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그 밖의 공영주차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